

2022년 신년화두 慎終謨始 (신증모시)

『맺음을 증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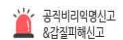
- **근 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배 경**
 -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한다면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자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의심 소지를 차단할 필요성에 의해 도입
- **의무내용**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함
- **적용대상**

구 분	내 용
공 직 자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 16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직 무 관 련 자	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사적이해 관 계 자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관련 Q&A

- Q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A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처리
- Q :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에서 [안 날]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A :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

**부조리
 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케이위슬 연결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